

팀 원	팀 장	펀드 커뮤니케이션 담당
년 월 일		
유자현	가인	이정호

[규약변경대비표]

집합투자기구명 : HYUN STEADY 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

시행예정일 : 2023년 05월 16일

주요변경사항 : 투자신탁 가입제한 (전문투자자),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<p>[펀드명] HYUN STEAD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 5 호</p>	<p>[펀드명] HYUN STEADY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5 호</p>	펀드명 변경
<p>제 1 조(목적)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,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자산운용 협(이하 '집합투자업자'라 한다)과 신탁업자인 농협은행(이하 '신탁업자'라 한다)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 1 조(목적) ①<항 신설> ②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자로만 이루어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249 조의 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, 투자설명서·자산운용보고서·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교부, 투자운용전문인력 변경, 환매연기, 부실자산 상각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, 기준가격의 일별공시, 회계감사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. ③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9조 제 7항 또는 법 제 9조 제 9 항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만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법 제 9조 제 19 항에 따라 수익자의 자격과 총수(100 인 이하)가 제한되며, 집합투자증권의 분할전매가 일부 제한되는 일반 사모투자신탁이다.</p>	1항신설, 2항, 3항 추가

<p>제 2 조(용어의 정의)</p> <p>9. "사모형"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(이하 "사모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로서 법시행령 제 14 조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49 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</p> <p>10. "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"라 함은 법 제 9 조제 19 항 제 2 호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</p>	<p>제 2 조(용어의 정의)</p> <p>9. "사모형"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(이하 "사모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로서 법시행령 제 14 조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100 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</p> <p>10. "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"라 함은 법 제 9 조제 19 항제 2 호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</p>	자본시장법 개정안 적용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HYUN STEADY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5호"라 한다.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p>7.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</p> <p>④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49조의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, 투자설명서 · 자산운용보고서 ·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의 교부, 투자운용인력의 변경, 환매연기 · 부실자산 상각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 공시, 기준가격의 일별 공시, 회계감사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.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HYUN STEADY 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"라 한다.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p>7.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</p> <p>④ [삭제]</p>	편드 명칭변경 규약 제1조 2항과의 중복으로 인한 삭제

<p>제3조의2(투자신탁의 가입 제한)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(이하 "적격투자자"라 한다)에 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문투자자로서 법시행령 제 271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2. 3 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, 그 밖의 단체(「국가재정법」별표 2 에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 	<p>제3조의2(투자신탁의 가입 제한) 이 투자신탁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(이하 "전문투자자"라 한다)에 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문투자자로서 법시행령 제 271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2. 전문투자자로서 3 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, 그 밖의 단체(「국가재정법」별표 2 에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 	<p>투자신탁 가입제한 변경 (일반투자자 -> 전문투자자)</p>
<p>제3조의3(투자권유 등) ①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②법 제46조 및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적격투자자에게 법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.</p>	<p>제3조의3(투자권유 등) ①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전문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②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[삭제]</p>	<p>자본시장법 개정안 적용 (2항 수정, 3항 삭제)</p>

<p>제5조 (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)</p> <p>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이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5조 (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)</p> <p>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.</p>	<p>신탁계약서 효력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일부 수정</p>
<p>제11조(수익증권의 양도)</p> <p>④ 수익자는 그 수익증권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양도의 결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, 수익자는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	<p>제11조(수익증권의 양도)</p> <p>④ 수익자는 제3조의2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갖춘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, 양도의 결과 법 제9조제19항에서 정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.</p>	<p>가입제한 변경으로 인해 4항 내용 변경</p>
<p>제15 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 대상 중 법 제4조에 1.(중략) 8.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9. 법 시행령 제6조4항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단, 상장 되어 있는 스팩에 투자하거나 스팩 상장을 위한 공모투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단기대출(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</p>	<p>제15 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 대상 중 법 제4조에 1.(중략) 8. 법 시행령 제6조4항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단, 상장 되어 있는 스팩에 투자하거나 스팩 상장을 위한 공모투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단기대출(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</p>	<p>15조 1항 8호의 내용을 같은 조 2항으로 이동. (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는 투자대기자금의 운용방법에 해당함)</p>

<p>일 이내의 금전 대여를 말한다)</p> <p>2. 만기가 1년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</p> <p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)</p>	<p>금융기관에의 예치</p> <p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)</p> <p>4.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의 거래</p>	
<p>제20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</p> <p>⑧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8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7조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신탁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 집 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 지 여부는 확인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기준가격 산정 시 이를 신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20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</p> <p>⑧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8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7조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신탁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및 법 제238조 제6 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확인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기준가격 산정 시 이를 신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문항 일부 수정
<p>제21조(수익증권의 판매)</p> <p>②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 득할 수 있다.</p>	<p>제21조(수익증권의 판매)</p> <p>②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 득할 수 있다. 단, 투자자는 법 제9조 제5항에서 정의하는 전 문투자자로 한정한다.</p>	

제21조의2(수익증권의 판매 제한 등) ③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제3조의2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갖춘 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.	제21조의2(수익증권의 판매 제한 등) ③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제3조의2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갖춘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.	가입 조건 변경으로 인한 문항 수정
제27조(기준가격 산정 및 제시) <5항 신설>	제27조(기준가격 산정 및 제시)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한다.	5항 추가
제29조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 ①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다.	제29조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"결산서류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재무상태표 2. 손익계산서 ②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.	자본시장법 개정안 적용

제35조의2(성과보수)

⑥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투자운용인력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.

1. 투자운용인력의 경력사항

성명	직위	주요 경력 및 이력
오종호	과장	2019.03 ~ 현재 자산운용 현 운용 본부 운용역 2010.07 ~ 2014.03 DB금융투자 FICC 운용팀 2009.06 ~ 2010.01 미래에셋대우증권 상품운용팀

2. 운용현황 (2020년 2월 28일 기준)

펀드명	설정액(원)	NAV(원)	기준가
HYUN STEADY 코 넥스하이일드 전 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 호	600,000,000	614,257,363	1,023.76
HYUN STEADY 하 이일드 전문투자 형 사모투자신탁 제2	748,942,288	761,930,946	1,017.34

제35조의2(성과보수)

⑥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투자운용인력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.

1. 투자운용인력의 경력사항

성명	직위	주요 경력 및 이력
오종호	차장	2019.03 ~ 현재 자산운용 현 펀드 운용팀 운용역 2010.07 ~ 2014.03 DB금융투자 FICC 운용팀 2009.06 ~ 2010.01 미래에셋대우증권 상품운용팀

2. 운용현황 (2023년 2월 28일 기준)

펀드명	설정액(원)	NAV(원)	기준가
HYUN STEADY 코 스닥벤처 전문투 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 호	5,755,614,137	5,626,941,105	1073.08
HYUN STEADY 코 스닥벤처 전문투 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	3,473,716,788	3,319,484,648	1028.97

운용역
운용성과
업
데이트

호				호							
HYUN STEADY 코 스닥벤처 전문투 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 호	3,000,000,000	3,233,748,547	1,077.92	HYUN STEADY 전 문투자형 사모투 자신탁 제5호	5,229,746,990	5,309,368,578	1103.25				
HYUN STEADY 코 스닥벤처 전문투 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 호	2,000,000,000	2,238,286,488	1,119.14	HYUN STEADY 하 이일드 전문투자 형 사모투자신탁 3호	2,195,884,147	2,188,754,623	1019.33				
제43조(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)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8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다 .						제 29조와의 중복					
<부 칙>			<부 칙>								
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 다.			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0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 다.								
			<부 칙>								
			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 다.								
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부 칙></p> <p>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05월 ##일부터 시행한다.</p>	
--	--	--
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

4층 (신사동, 제이타워)

주식회사 자산운용 현

대표이사 이 기 중 (인)

